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31
----------	------

202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송재혁 의원 외 22명
- 나. 발 의 일 : 2020년 5월 25일
- 다.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라. 상 정 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해결하며, 각종 문화,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근거를 규정함(안 제6·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0. 6. 3. ~ 6. 10.)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주민자치회 자치구별 추진 현황 : 22개구 136개동 구성·운영('19.12기준)

- 1단계 시행 4개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17.11~
※ 성동, 성북, 도봉, 금천 ※ 확대동 추가 구성·운영 : 20개동('19)
- 2단계 시행 11개구 5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18.10~
※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동작, 관악, 강동
- 3단계 시행 7개구 3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19.7~
※ 용산, 광진, 중랑, 강북, 구로, 영등포, 송파
- 4단계 시행 3개구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예정) : '20.7~
※ 중구, 서초, 강남

자치회관 현황

(2019.12월말 기준)

주민센터 수	자치회관 수	전체 프로그램 수
425개소	425개소	8,681개 (자치회관 평균 20개)

- ※ 종로구 사직동 : 주민센터 내 2개 자치회관 운영(사직동 자치회관, 세종로 자치회관)
- 강동구 둔촌1동 : 재건축으로 인한 자치회관 미운영

- 본 제정안은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결하며, 각종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또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치시킴으로써 정합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범위 등으로 조문을 구성하고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
제2조(정의)	-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 등 마련
제4조(지원 범위)	-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관련 지원 사항 규정
제5조(사무의 위탁)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보고)	-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근거 규정 마련
제7조(지도·감독)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다만,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서울시의 재정 투자 문제, 특별교부금 교부와의 중복성 문제,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정 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등을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②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③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특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지역의 주민 공론장 및 공적 참여의 장으로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17년 4개구 26개동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25개구 292개동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 425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임.

주민자치회 연차별 확대계획

○ '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5개 전 동 확대 예정

- 4개구 26개동('17) → 15개구 81개동('18) → 22개구

136개동('19) → 25개구 292개동('20) → 25개구 425개동('22)

시행 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시범동)	26(시범동)	46(시행확대)	61(전동확대)	61(전동확대)	61(전동확대)
2단계(11개구)	-	55(시범동)	55(시범동)	177(시행확대)	187(시행확대)	188(전동확대)
3단계(7개구)	-		35(시범동)	35(시범동)	121(전동확대)	121(전동확대)
4단계(3개구)	-			19(시범동)	19(시범동)	55(전동확대)
누계	26	81	136	292	388	425
비율(%)	6%	19%	32%	69%	91%	100%

※ '20년 부터의 단계별, 자치구별 확대동 수는 조정중으로 변동 예정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9.12월말 현재)

구 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등	기 타
프로그램(개)	8,681	443	5,608	549	334	1,420	313	14
비 율	100%	5.1%	64.6%	6.3%	3.8%	16.4%	3.6%	0.2%

○ 주민자치 : 지역공동체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 마을가꾸기 등

○ 문화여가 :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 예능, 취미활동, 전시회 등

- 지역복지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 주민편익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 시민교육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정보화·외국어교육 등
- 지역사회진흥 등 :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 다만, ‘주민자치’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존재할 수 있는 바, 상위 법령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안 제2조제1항과 같은 정의의 근원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주민자치 : 지방행정을 지방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
주민자치 : 동네단위 통치조직으로서의 ‘정부(government)’가 아닌 ‘통치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일종
주민자치 :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주민자치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투표를 기반으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들에 의해 구성되지만 주민의 뜻이 모두 반영되거나 주민의 자치권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주민참여의 실현 수단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 지원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은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책무규정에 대해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해관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대상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지원 범위(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주민자치회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의 입법취지를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안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상 자치구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바,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제1항제1호(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개선) 및 제2항제1호(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가 「지방자치법」 에서 규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써 서울시의 지원가능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의 시범설치 및 운영지원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방분권법」 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관련 법령 (「지방분권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치구 고유사무 여부 및 지원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자 문	자 문 의 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지원사업이 자치구 고유사무에	자문 1 (긍정) -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업무,

자 문	자 문 의 견	
<p>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범위 및 가능 여부</p>		<p>협의업무, 수탁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자치회관의 운영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u>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함.</u></p> <p>- 다만,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2항에서 <u>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봄.</u></p>
	<p>자문 2 (긍정)</p>	<p>- <u>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교육·체육·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나, 고유사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운영 및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가능함.</u></p>
	<p>자문 3 (부정)</p>	<p>-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지원 사무는 자치구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서는 <u>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지방분권법」 조문 삭제 내지 「지방자치법」 상 근거 마련후 제정운영 가능</u></p>

4) 사무의 위탁(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주민자치회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의 입법취지를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 자치구 사무의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감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간섭하고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법률자문의뢰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통한 사무의 위탁은 자치구 고유 업무에 대한 간섭 및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5)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지도·감독(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는 시장이 주민자치회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예산 지원이 특별조정교부금과 중복적 성격을 가진 예산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행정국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예산만을 배정해주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 사업이 당초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재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31
----------	------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송재혁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순선,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김종무, 김태호,
김평남, 송도호, 송명화,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장상기, 전병주,
채유미, 홍성룡, 황규복,
이상훈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해결하며, 각종 문화,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 나.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마.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바.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근거를 규정함(안 제6·7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②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③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